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62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고민정·권칠승·김민석

김주영 • 민병덕 • 서삼석

신영대 · 용혜인 · 이용우

임종성·최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해당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영위를 위한 법률 대리인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친권자나 후견인 없는 아동에 한정하여 후견인 선임 전까지 후견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아동 복지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 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사람으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후견인) ① ~ ③ (생 략)	제3조(후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
	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
	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